## [양식 제33호]

## 국적취득자의 성·본 창설신고서 ( 년 월 일)

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하고, 선택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
**야시** 대한법률구조공단

① 성·본 창설 자	성	명	한글	(정) / (명)					주민등록			_			
			한자	(성) / (명)				번	호						
	등록기준지														
	주	소													
② 성·본	종전의 성(姓)		한글			한자				한글		Ę	한자		
	창설한 성(姓)		한글			한자			창설한 본(本)	한글		ই	한자		
③허가일자					년	월	일	Ę	법원명			·	,		
<b>④</b> ٦]	타사	ਰ੍ਹੇ													
⑤ 신 고 인	성 명		① 또는 서명						주민등록번호			-			
	자 격		①본인 ②법정대리인 ③기타(자격:										)		
	주 소								전화			이메일	!		
 ⑥제	출인	성 명					주민등	록	번호			_			

## 작 성 방 법

- ※ 본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,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·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·본창설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.
- ④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 - : 창설 전의 성과 본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경우에 원래의 문자 표기
- ⑤란: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창설 후(개명 후)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.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⑥란: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## 첨 부 서 류

- 1. 국적취득자의 성·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.
- 2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\*\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